

창원지방법원 2019. 9. 19 선고 2018나51727 판결 [연대보증금 청구]

---

## 재판경과

창원지방법원 2019. 9. 19 선고 2018나51727 판결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 1. 24 선고 2017가단30053 판결

## 전 문

**원고, 항소인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륜

담당변호사 심재국, 이창희, 전진대

**피고, 피항소인B**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대승

**변론 종결**2019. 8. 8.

**판결 선고**2019. 9. 19.

**제1심판결**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 1. 24. 선고 2017가단30053 판결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4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5.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이 유

###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 당심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의 제2면 제3행의 인정근거에 '갑 제11호증의 8'을 추가하고, 제3면 마지막 행 바로 위에 아래 기재를 추가한다.

사. 원고는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이후 'C가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 없이 2007. 4. 9.부터 2009. 6. 19.까지 20회에 걸쳐서 합계 56,440,000원을 차용하여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C를 형사고소하였고, C는 이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나. 제1심 판결문 제5면 마지막 행부터 제6면 제14행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원고는 우선 피고가 이 사건 각서의 연대보증인란에 인감도장을 직접 날인하였으니 이 사건 각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고, 그에 따라 피고는 연대보증 채무를 부담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문서에 날인된 작성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이 사실상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나, 위와 같은 사실상 추정은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 이외의 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 밝혀진 경우에는 깨어지는 것이므로,

문서제출자는 그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으로부터 위임받은 정당한 권원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까지 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3783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이 사건 각서에 연대보증인으로 기재된 피고 이름 옆에 찍힌 인영이 피고의 인감도장에 의한 것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한편 갑 제4, 7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가 이 사건 각서에 피고 이름과 주민번호, 주소를 기재하고 피고의 인감도장을 날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는 C의 날인행위가

피고로부터 위임받은 정당한 권원에 의한 것임을 입증할 책임이 있는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C가 피고로부터 연대보증을 위한 대리권을 부여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한편, 연대보증인란에 기재된 이름 부분이 피고의 서명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한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설령 C가 피고의 동의 없이 일상가사대리의 범위를 넘어 피고를 연대보증인으로 하는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한 것이라 하더라도, C는 피고의 배우자로서 일상가사대리권을 가지고 있고, 생활비와 피고의 시의원 선거비용에 사용하기 위해 돈을 차용하였으며, 원고에게 이 사건 각서와 함께 피고의 인감증명서를 교부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적어도 표현대리 법리에 따라 원고에게 연대보증 채무를 부담한다.

2) 판단 살피건대, ㉠ C가 2012. 8. 7. '146,000,000원을 C가 2008. 7. 25.부터 2012. 8. 6.까지 사이에 원고로부터 현금을 차용하였고, 그 용도는 C의 가정과 남편(피고) 선거비용으로 소진하기 위해 차용했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점, ㉡ C가 2014. 3. 5. 배우자인 피고를 연대보증인으로 기재하고 피고 인감도장을 날인한 이 사건 각서를 피고의 인감증명서와 함께 원고에게 교부한 점, ㉢ C가 원고로부터 송금받은 돈 일부를 카드대금으로 사용하고, 2008. 2. 26. 원고로부터 송금받은 1,500,000원을 포함하여 같은 날 피고에게 3,500,000원을 송금한 점은 앞서 본 바와 같거나, 갑 제1호증의 1, 을 제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 및 갑 제2,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앞서 본 사정들만으로는 원고가 'C에게 피고를 대리하여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① 우선, 원고가 C에게 송금한 내역(2006. 7. 12.부터 2009. 6. 19.까지 합계 약 73,000,000원)과 C가 변제한 내역 및 각 차용증과 각서상의 이자 약정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2012. 8. 7.자 각서 및 이 사건 각서상의 1억 4,600만 원 전액이 원고가 C에게 빌려준 대여원금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는 위 2009. 6. 19.자 송금 뒤부터는 C에게 현금으로 돈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나, 그 이전과 달리 차용증을 작성 받음도 없이 금융거래내역이 남지 않는 방법으로 거액의 현금을 대여하였다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지며, 달리 영수증 등 현금 교부를 뒷받침할 자료도 없다.

그럼에도 2009. 6. 20.자 차용증이 작성된 약 3년 후에 원금이 1억 4,600만원으로 기재된 2012. 6. 7.자 각서가 작성되었는데, 이에 대해 피고가 쉽게 연대보증을 수락할 만한 상황을 아니었을 것으로 보인다.

② C의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C는 위와 같이 빌린 돈의 일부를 신용카드 대금 납부 등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원고 주장과 같이 C가 일괄하여 생활비와 선거비용에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위 돈을 빌렸다고 보기 어렵다.

특히 원고는 2006. 5. 31. 시의원 선거가 끝난 다음인 2006. 7. 12.부터 C에게 돈을 송금하기 시작하였고, 피고는 선거 전 2005. 12. 30.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퇴직금 약 2억 4천만 원을 수령하여 선거비용으로 사용하고 2006. 5. 31. 시의원 선거에서 당선되어 법정 선거비용도 보전 받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후 C가 원고로부터 금융기관 이율보다 훨씬 높은 월 5부 이자로 돈을 빌리는 것에 피고가 동의할 이유도 없어 보인다.

③ 원고는 C가 피고로부터 연대보증을 관한 대리권을 받았는지, 또는 피고가 C의 금전차용에 대해 알고 있는지를 피고 본인에게 확인한 사실이 없다. 즉, 원고는 C와 친하게 지내며 피고와도 모르는 사이가 아니었음에도, 금전 차용이나 변제 문제에 관하여 직접 피고 본인에게 확인을 한 사실이 한 번도 없고, 2014. 3. 5. 유일하게 연대보증 취지가 명시된 이 사건 각서를 작성 받을 때조차 피고에게 보증 의사에 관하여 확인해 보지 않고, 대리인이 발급받은 인감증명서만 받았으며, 이 사건 각서에는 피고의 서명도 되어 있지 않았다.

④ 또한 원고와 C는 이 사건 각서에 연대보증인으로 피고가 포함되어 있음에도, 그 후 2016. 8. 5.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함에 있어 연대보증인 없이 C만을 채무자로 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각 차용증과 각서의 작성시기, C의 금융거래내역, 관련 형사사건의 진술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는 C로부터 고율의 이자를 지급받는 사정 때문에 피고에게 C의 차용사실을 알리지 못하다가, C가 변제능력이 부족하자 피고의 공동 책임을 확보하기 위해 C에게 2012. 8. 7.자 각서에 차용 용도를 기재하게 하고, 2014. 3. 5. 피고가 연대보증인으로 기재된 이 사건 각서를 교부받았을 가능성이 크다.

###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판사**김민정

**판사**홍수진

**판사**지수경

별지